



미국, DC형 퇴직연금에 연금보험 편입 활성화

김진억 수석담당역

미국 정부는 최근 DC형 퇴직연금에 연금보험 편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여, 연금보험에 대한 고용주의 배상책임 부담을 경감하고 가입자의 이직이나 퇴직 시 이관을 용이하게 함. 본 법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나, 연금보험의 비싼 수수료와 보험회사의 지급불능 시 고용주에 대한 소송을 제한하는 규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한편 최근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DC형 퇴직연금에 연금보험이 제공될 경우 젊은 세대일수록 선택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 퇴직연금은 확정금부형(이하, 'DB형'이라 함)에서 확정기여형(이하, 'DC형'이라 함)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안정성 확보 문제가 부각됨

-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고용주가 퇴직 후 평생 급여를 보장하며, 기금부족으로 인한 경우에도 연금급여보증공사¹⁾에서 퇴직급여가 지급되어 근로자의 안전한 노후소득이 보장됨
- 반면 DC형 퇴직연금(401(k), IRA 등)은 고용주가 설정한 퇴직계좌에 근로자가 총급여의 일부를 기여(선택적 고용주 매칭 기여)하며, 근로자가 종업원이 가입한 상품에 따라 노후소득 수령 방법도 결정됨
- 이에 따라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안정적인 노후소득(guaranteed lifetime income)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정부차원으로 이슈화되어 옴

■ 미국 정부는 최근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돕기 위한 법안(The 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Act, 이하, 'SECURE법'이라 함)을 제정함

- 2018년 미국 노동통계국 연구에 따르면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55%에 불과하며, 가입자들의 적립액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1) 연금급여보증공사(The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PBGC)는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연방정부기관임. PBGC는 기금 부족으로 종료된 민간부문 DB형 퇴직연금에 대해 연금급여의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함

- 또한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고용주 중에도 평생소득이 보장되는 연금보험을 운용상품으로 제공하는 고용주는 소수로 나타나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의 안정성이 낮음
- 이에 따라 SECURE법이 2019년 말 제정되었으며, 이는 세제혜택 등을 통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으로 전환(annuitization)할 수 있도록 함
 - DC형 퇴직연금 자동가입 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이 401(k)를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 가입(Auto Enrollment)으로 401(k) 또는 SIMPLE IRA 제도를 설정하는 고용주에게 연간 최대 500 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함
 - 연금보험(Annuity)을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배상책임부담을 경감하여 연금보험을 퇴직연금 운용상품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함

■ SECURE법은 DC형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고용주가 연금보험의 평생 소득에 대한 예시를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연금보험 사업자의 신중한 선택을 위해 신탁 세이프하버자침을 개정하며, 가입자의 이직과 퇴직 시 수수료와 해약공제 없이 연금보험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함

- 미국의 DC형 퇴직연금 운용상품 중 평생소득을 보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연금보험이나, 그동안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고용주들은 연금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의 파산 또는 지급불능 시 배상책임 문제로 인하여 운용상품 도입에 소극적이었음
- SECURE법은 평생소득 보장을 위한 3가지 규정²⁾을 통해 보험회사의 채무불이행 시라도 고용주의 잠재적인 배상책임 부담을 경감시킴
 - 고용주가 과거 7년간 일정 요건³⁾을 갖춘 연금보험 제공사를 선택하는 경우, 고용주는 배상책임으로부터 보호받게 됨
- SEUCUE법은 제정 이전에는 해약으로 간주하던 연금보험을 이직, 퇴직 시 90일 이내에 다른 적격 DC형 퇴직연금으로 옮기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해약공제와 수수료 없이 이관할 수 있도록 함⁴⁾
- 본 법의 제정에 따라 그동안 적격퇴직연금시장에서 도입이 부진했던 연금보험, 특히 세제적격종신연금(Qualified Longevity Annuity Contracts: QLACs)의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⁵⁾

2) Section 203. 평생소득 공시 요건(New lifetime income disclosure requirements), Section 204. 연금보험 제공사 선정을 위한 세이프하버(Fiduciary safe harbor for selecting an annuity provider), Section 109. 평생소득 옵션의 이관성(Portability of Lifetime Income Options)

3) ① 주(州)보험감독국으로부터 퇴직소득 보증계약(guaranteed retirement income contracts)을 허가받음, ② 주(州)법에 따라 감사받는 재무제표 제출, ③ 연금보험 제공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주(州)의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적립금을 유지

4) NAPA(2020. 2. 10), "Understanding the SECURE Act's Lifetime Income Provisions"

5) The Wharton School, Pension Research Council(2020. 1. 16), "Will the SECURE Act Open the Dam for Longevity Annuities?"

■ SECURE법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나 연금보험의 비싼 수수료와 보험회사의 지급불능 시 고용주에 대한 종업원 소송을 제한하는 규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연금보험은 다양한 옵션과 복잡성으로 인해 가격이 높은 보험상품이며, 이로 인해 퇴직연금상품에 포함될 수 있는 저렴한 표준적인 상품이 없다는 우려가 있음⁶⁾

■ 한편, 최근 실시된 조사⁷⁾에 의하면 DC형 퇴직연금에 연금보험이 제공될 경우 젊은 세대일수록 선택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61%는 평생소득 보증상품인 연금보험을 선택할 의사를 나타냄
- 특히 퇴직에 근접한 근로자보다 오히려 젊은 근로자들이 연금보험 선택에 더 개방적으로 나타남
 - Z/밀레니얼 세대⁸⁾ 근로자의 약 3분의 2(64%)가 연금보험 옵션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반면, X세대는 52%, 베이비부머세대는 42%가 그렇다고 답함
 - 젊은 근로자들의 경우 전통적 DB형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낮아 안정된 연금소득에 더 많은 가치를 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밀레니얼 세대 근로자의 약 절반(47%)은 퇴직 시 퇴직연금 자산이 주 수입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kiri](#)

6) Forbes(2020. 4. 23), "How The SECURE Act Impacts Annuities In 401(k)s And What Still Needs To Be Done"

7) LIMRA(2020. 4. 21), "Secure Retirement Institute: More than half (56%) of U.S. Workers Are Interested in a Guaranteed Lifetime Income Option within Their Retirement Savings Plan"

8) 여기서 Z세대는 1995~2012년, 밀레니얼세대는 1980~1994년, X세대는 1965~1979년, 베이비부머는 1946~1964년생을 말함